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- 의안번호 제2330호,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·시행('21.6.23.) 사항을
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
 -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5% 이상
증가한 부분에 대하여
 -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 등과의 형평을 고려
 -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
 -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

-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

2021. 4. 27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